

대구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정 2010.05.18. 교무위원회)

(개정 2010.08.02. 교무위원회)

(개정 2012.11.01. 법인이사회)

(개정 2022.01.05. 운영위원회)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정관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및 『학교법인세기학원정관』 제79조의 1에 의해 설립한 대구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대구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1.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본점)는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거문1길 202(다부리 산117-6) 대구예술대학교 내에 둔다.

2. 산학협력단의 지점은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93(효목동 286-2)에 대구예술대학교 부속시설 내에 둔다.

제4조 (업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1. 산학연협력관련 부속기관의 행정지원 및 조정
2.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3.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4.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5.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7.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5조 (이사) 산학협력단에 이사 1인을 두며, 단장이 이사가 된다.

제6조 (단장) ①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단장 및 부단장의 자격은 따로 정한다.

제7조 (단장의 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단장이 없는 때에는 총장이 정하는 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 (감사) 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경할 수 없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하부조직)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 및 사업단(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부서 및 사업단(팀)에는 직원, 연구교수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소속 인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총장은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대학의 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부서 및 사업단(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보상금

제11조 (보상금의 지급) ① 단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12조 (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3조에 의한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제13조 (수입) 다음 각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연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연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이자수입
6.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과 실험 실습시설 및 장비 사용료 수입
7. 기타 산학연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14조 (지출) 다음 각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지출로 한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경비
8. 기타 산학연협력에 필요한 경비

제15조 (회계관리)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연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 (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수입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되, 총장은 대학의 직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예·결산서 제출) 단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결산보고서를 작성,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칙

제19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제21조 (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된다.

제22조 (공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대학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1.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산학협력단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제23조 (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